

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경숙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9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이경숙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박수빈, 신복자, 윤영희, 이봉준, 이원형, 장태용, 채수지, 최진혁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 또는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,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‘서울형 작은 학교’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를 위해 노력 중임. ‘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(2022)’에 따르면 매년 신입생 증가, 지역사회 만족도 증진 등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함.
- 그러나 서울시는 타 시도와 같은 ‘작은 학교 지원 조례’가 없음. 작은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일부 상충한다는 시각도 있으나, 서울 지역의 특성, 학교의 역사성,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을 고려해 작은 학교 유지 필요성이 있음.
- ‘서울형 작은 학교’는 학교 교육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적정 규모화 정책과 균형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(안 제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작은 학교 지원 운영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작은 학교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교직원 배치와 학생 전입 확대 방안 등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바.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 명시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교육자치법, 교육기본법, 초·중등교육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
2. “작은 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고 한다)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은 학교 운영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작은 학교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
 2. 작은 학교 지원 대상 및 절차, 규모 등에 관한 사항
 3.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
 4.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 5.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
 6.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, 학생, 학부모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작은 학교 지원 사업)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
 2.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
 3.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
 4.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
 5.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 6.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의 장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, 학생,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

력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교직원 배치 등)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 중인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학생 전입 확대 방안 등)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

1. 작은 학교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
2.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 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
3. 작은 학교별 우수사례 등 발굴

4. 작은 학교 운영상 건의 및 개선사항

5.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, 자치구,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5조 (작은 학교 지원 사업)	△	○ 제5조제1항~2항은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<u>기시행중</u> 1)으로 향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
		×	○ 제5조제3항은 의견(교직원, 학생, 학부모 등)을 반영하도록 함
		×	○ 제5조제4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 학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2	제6조 (교직원 배치 등)	×	○ 신규 인력 채용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 시 기존 인력 활용(인력 재배치 등)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3	제7조 (학생 전입 확대 방안 등)	△	○ 전입 확대를 위한 '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학구특례 적용 등의 제도2)'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 수립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
4	제8조 (자문단 구성 및 운영)	○	○ 자문단 신규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련 비용 발생
5	제9조 (협력체계 구축)	×	○ 협력체계 구축의 범위, 방법, 대상기관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며,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 : 제8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

1) 서울형 작은학교 「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」 운영 계획 및 성과 * 서울시 교육청 제공자료

- 추진근거 :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「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」 추진계획(학교지원과-2545, '16.2.29)
- 추진대상 : (1기) 학생수 300명 미만 (2기) 학생수 300명 미만 (3기) 학생수 240명 이하
- 그간 추진내용

구분	운영기간	대상	재정지원(연간)	운영성과
1기	'17.3.1.~'19.2.28(3년)	8교	학교 별 36,886천원	○ 동아리활동, 방과후학교 연계한 학교별 맞춤형 특색프로그램 개발·운영 ○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참여 및 만족도 제고 ○ 우수교원 초빙 확대로 작은학교 활성화 동력 확보 등
2기	'20.3.1.~'23.2.28(3년)	8교	학교 별 25,000천원	
3기	'23.3.1.~'26.2.28(3년)	8교	학교 별 25,000천원	

2) 학교급별 입학 방법

- (초등학교) 교육장이 설정한 학교별 통학구역에 따라 특정 지역 거주 취학대상자는 특정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
※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~제18조
- (중학교) 교육감이 설정한 학교군 내 소속 중학교 중에서 교육장이 전산 추첨 배정 ※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
- (고등학교) ① 학교장 선발고(특목고, 특성화고, 자사고 등) :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선발
② 교육감 선발고(후기 일반고) : 학교 선택제에 따라 2~4개 학교를 지원하여 1,2,3,단계 절차를 거쳐 전산 추첨 배정
※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~제87조

나. 전제
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자문단 구성은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연간 4회(분기별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자문단 구성 위원 중 3명은 공무원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≙ 38,600천원(연평균 7,72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8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	7,720	7,720	7,720	7,720	7,720	38,600
	소계(a)	7,720	7,720	7,720	7,720	7,720	38,6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7,720	7,720	7,720	7,720	7,720	38,6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에 대한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= 38,600천원(연평균 7,72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8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	7,720	7,720	7,720	7,720	7,720	38,600
	소계(a)	7,720	7,720	7,720	7,720	7,720	38,6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7,720	7,720	7,720	7,720	7,720	38,600

- 자문단 구성·운영 = 38,600천원
 - = 참석수당 + 업무추진경비
 - = 32,000천원 + 6,600천원

- 참석수당 = 32,000천원
 - = 수당단가 × 지급인원 × 연 4회 × 5년
 - = 200천원 × 8명 × 4회 × 5년

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
※ 지급인원 : 자문위원 11명 중 공무원 3명은 제외(시의원, 학교장 등)

- 업무추진경비 = 6,600천원
 - = 경비단가 × 지급인원 × 연 4회 × 5년
 - = 30천원 × 11명 × 4회 × 5년

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